

서울고등법원 2024. 11. 6 선고 2024나2002515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 등]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11. 6 선고 2024나200251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가합4340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1. 재단법인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김성민, 장인성, 곽호근

피고, 항소인 1.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예나린

2.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김남홍, 김문성

변론 종결 2024. 8. 28.(피고 E에 대하여)

2024. 10. 18.(피고 D에 대하여)

판결 선고 2024. 11. 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가합43400 판결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C와 연대하여,

가. 원고 재단법인 A에게 2,813,417,134원 및 그중 2,713,417,402원에 대하여는 2023.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99,999,732원에 대하여는 2023. 3. 18.부터 2024. 11.

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703,148,805원 및 그중 678,148,872원에 대하여는 2023.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24,999,933원에 대하여는 2023. 3. 18.부터 2024. 11. 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C와 연대하여,

가. 원고 재단법인 A에게 3,013,416,599원 및 그중 2,713,417,402원에 대하여는 2023. 4.

17.부터, 299,999,197원에 대하여는 2023. 3. 18.부터,

나. 원고 B에게 753,148,671원 및 그중 678,148,872원에 대하여는 2023. 4. 17.부터,

74,999,799원에 대하여는 2023. 3.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위 C이 항소하였으나 당시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항소취하 간주로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피고' 표시를 '제1심 공동피고'로, '피고들'을 '제1심 공동피고 C 및 피고들'로 각 일괄하여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상환전환우선주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0, 11행의 "6.399원"을 각 "6,399원"으로 고친다.

2. 판단

가. 주식매매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 "주식매매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목차는 이 판결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수정된 것으로 본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3행 밑에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목차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의 각 주식인수계약은 H의 무권대리 행위에 의해 체결된 것이고, H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계약의 체결은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로서 원고들은 H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 각 계약은 피고 E에 대해 효력이 없다.

(2) 원고 재단은 선교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데 그와 전혀 무관한 F의 사업에 오로지 투자수익만을 기대하고 영리적 목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것이므로 원고 재단이 체결한 이 사건 각 주식인수계약은 원고 재단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다.

(3) 원고 재단이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각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고, 어쩌면 원고 B가 원고 재단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판단

(1) 무권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지만,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으로서 행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147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불요식의 행위로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함이 없이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E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E는 신속한 업무처리에 필요하다는 H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인감도장을 H에게 맡겨 두었고, H가 업무에 필요하다면서 요청할 때마다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H에게 보내 주었던 점, 이 사건 각 주식인수계약서에는 위 각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날인 2020. 10. 5. 발급된 피고 E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주식인수계약 체결 이후 피고 E가 H에게 이에 대해 항의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H는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인수계약의 체결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아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 E가 H에게 그러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E는 H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거나 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이 사건 각 주식인수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은 H에게 위 각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E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주식인수계약의 효력은 피고 E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재단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재단의 정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기독교 세계관의 가치를 구현하고 공의로운 사회 건설에 앞장서며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한 문서선교사업 및 선교사업 지원
 - 1-2. I언론 등 기독교 복음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구입 배포
 - 1-3. 기독교 문서선교를 위한 일간신문 발행
 - 1-4. 인터넷 모바일 선교를 위한 콘텐츠 사업
2. 목적사업에 수반되는 교육, 출판, 홍보 방송 등 매스미디어 운영
 - 2-2. 종합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

3. 기독교 문화 창달사업

4. 목적을 같이하는 교회 및 기관과의 협력 및 후원사업

5. 기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 재단은 위 정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주식인수계약의 체결은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위와 같은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 E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 재단의 이사회 결의 흠결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재단은 2020. 2. 17. 이사회에서 제3안건 '임원 업무분장의 건'으로 원고 B가 30억 원 미만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업무를 집행하기로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재단이 위 이사회 결의 이후인 2020. 10. 5. 이 사건 각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계약에 피고 E가 의심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E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7행의 "3) 소결"을 "다) 소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각주 3) 제3행의 "돈이"를 "돈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각주 4) 제2,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발생한 돈은 178,355,687원(소수점 이하 버림)이고 이를 주식인수대금과 합하면 678,354,350원인데, 원고 B가 구하는 금액은 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다.』

나. 위약벌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주식인수계약 제22조 제1항은, F 또는 제1심 공동피고 C 및 피고들에게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1심 공동피고 C 및 피고들에게 주식매수청구와 별도로 이 사건 각 주식 인수대금의 15%에 상당하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위약벌'이라 한다), F 또는 제1심 공동피고 C 및 피고들에게 제21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공동피고 C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주식인수대금의 15%에 상당하는 위약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 D

이 사건 각 주식인수계약 제22조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의 재량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목적이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격은 지연손해금에 불과하므로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2) 피고 E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은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우므로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피고 D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는 반면,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주식인수계약 제22조는 '위약벌'이라고 당해 금원의 성격을 명시하고 있는 점, 또한 위 각 계약 제22조 제2항은 '주식매수청구권 및 위약벌 청구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실제 보전 받지 못한 손해가 있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약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점, 이 사건 각 주식인수계약은 제21조에서 피고들의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규정하면서 그와 별도로 위약벌을 규정한 것인바 이는 피고들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은 그 문언 그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구분되는 위약벌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 D은 이 사건 각 주식인수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약벌은 그 일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E 주장에 대한 판단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으나,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다만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일반조항인 공서양속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위약벌 약정 중 이 사건 각 주식 인수대금의

5% 및 이에 대하여 상법상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들은 투자자이고 피고들은 투자금을 유치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F는 2019. 6.경 설립된 신설회사였던 점 및 이 사건 각 주식인수계약 체결 무렵 F의 재무 상황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들의 투자가 절실하게 필요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들은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F 및 피고들에게 광범위한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의무, 통지의무, 보고의무²⁾ 등을 부과하는 한편, F 및 피고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주식인수대금 및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합계액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F 및 피고들의 의무 위반행위의 책임 정도나 그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주식인수대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유리한 계약 조건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들은 F에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달리 부담하는 의무가 없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인수계약 제21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투자원금 전액 및 그 납입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이에 더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주식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이로써 투자원리금은 손실 없이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스스로 떠안아야 할 투자 손실의 위험은 피고들에게 전가한 측면이 있다.

(라) 여기에 주식인수대금의 규모, 위약벌이 주식인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F의 경영상태 및 F와 피고들의 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 위반이 원고들의 손해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위약벌 약정에 의하여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이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식인수대금에 연리 15%를 가산한 금액을 회수하게 될 원고들에 대하여 주식인수대금의 15%에 해당하는 위약벌 지급의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바, 이는 원고들이 위 위약벌 조항을 통한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는 이익과 비교할 때 피고들에게는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중 주식인수대금의 5% 및 이에 대하여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금액(위약벌 원금 및

자연손해금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위약벌의 액수 산정 따라서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 재단에게 99,999,732원(= 원고 재단의 주식인수대금 1,999,994,652원 × 5%), 원고 B에게 24,999,933원(= 원고 B의 주식인수대금 499,998,663원 × 5%)과 원고들이 구하는 제1심 공동피고 C 및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중 가장 늦은 날의 다음 날인 2023. 3.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 재단에게 합계 2,813,417,134원(= 주식매매대금 2,713,417,402원 + 위약벌 99,999,732원) 및 그중 주식매매대금 2,713,417,402원에 대하여는 2023.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위약벌 99,999,732원에 대하여는 2023. 3. 18.부터 2024. 11.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합계 703,148,805원(= 주식매매대금 678,148,872원 + 위약벌 24,999,933원) 및 그중 주식매매대금 678,148,872원에 대하여는 2023.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위약벌 24,999,933원에 대하여는 2023. 3. 18.부터 2024. 11.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배광국

판사박형준

판사장석조

- 1) 을 제9호증 18면 표 2019년 F의 자산총계 2억 6,800만 원, 부채총계 3억 7,600만 원 등
- 2) 이 사건 각 주식인수계약 제8조, 제9조, 제21조 제1항 제2호 등